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인 뉴질랜드, 아세안회원국, 일본, 중국,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제13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1조제22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같은 협정의 회원국에게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고,
해당 물품의 수출국과 긴급관세조치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2조제6항)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대상의 제한(제22조제7항)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제한함
 -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전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인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가능기간 및
최장기간(제23조제1항제17호, 제2항제19호 및 제3항제19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가능기간
및 동 조치의 최장기간을 규정함
 - 긴급관세조치 가능기간 :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
철폐가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다만, 발효 첫 해에는 긴급
관세조치를 할 수 없음)
 - 긴급관세조치의 최장기간 : 3년(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포함)
 - 긴급관세조치 연장시 최장기간 : 4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긴급관세조치 대상이었던 물품은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
방법의 협의(제25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대국과 무역보상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제27조)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 완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대항조치의
특례(제32조제12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
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동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관세조치일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1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33조)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까지 해당 회원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현장
조사사실 및 필요서류 등을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최종판정을 하기 10일전 까지 해당
판정의 근거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제34조)

가. 제·개정 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회원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 사실 및 필요서류 등을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해당 물품의 수출국이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비밀이 아닌 공개 요약서를 송부하도록 규정
-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최종판정을 하기 10일전 까지 해당 관정의 근거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